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안 자	송은섭 의원 외7인
제안연월일	2007년 12월 12일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년. 12월 12일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 외 7인

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는 계속 자치행정국 사무로 존치하므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(을지훈련 등)도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함이 효율적임.
- 비상대책업무는 총무계획, 을지훈련 등 총괄 사항으로서 자치행정국 부서로 존치함이 타당함.
- 타 시·도의 비상대책 업무는 자치행정국 또는 기획부서에서 다수가 전담하고 있음.

2. 주요내용 (수정내용)

- 제7조(자치행정국)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자치행정 일반, 행정구역, 비상대책,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사항
- 제11조(건설방재본부)제6호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 - 민방위·경보통제·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자치행정일반, 행정구역, 비상대책,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사항

안 제11조제6호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민방위·경보통제·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

※ 그 외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함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자치행정국)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2(생략)</p> <p>3.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비상대책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자치행정국)</p> <p>.....</p> <p>1.~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<u>갈등관리</u>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자치행정국)</p> <p>.....</p> <p>1.~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자치행정 일반, 행정구역, 비상대책, <u>갈등관리</u> 및 여론동향에 관한사항</p>
<p>제11조(건설재난관리본부) 건설재난관리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5(생략)</p> <p>6. 민방위·경보통제·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7.~8. (생략)</p>	<p>제11조(건설방재본부)건설방재본부장.....</p> <p>....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민방위·경보통제·국가기반보호·비상 대책에 관한사항</p> <p>7.~8. (생략)</p>	<p>제11조(건설방재본부)건설방재본부장.....</p> <p>....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~8. (생략)</p>